

사전결정서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정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내용에 대한 건축법령 등 검토결과	[] 적합		[] 부적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적합 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d>• 건축위원회심의</td><td>[]적합</td><td>[]부적합 (사유:</td><td>)</td></tr><tr><td>•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</td><td>[]적합</td><td>[]부적합 (사유:</td><td>)</td></tr><tr><td>• 사전환경성검토 협의</td><td>[]적합</td><td>[]부적합 (사유:</td><td>)</td></tr><tr><td>• 개발행위허가</td><td>[]적합</td><td>[]부적합 (사유:</td><td>)</td></tr><tr><td>•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</td><td>[]적합</td><td>[]부적합 (사유:</td><td>)</td></tr><tr><td>• 농지전용허가·신고 및 협의</td><td>[]적합</td><td>[]부적합 (사유:</td><td>)</td></tr><tr><td>• 하천점용허가</td><td>[]적합</td><td>[]부적합 (사유:</td><td>)</td></tr><tr><td>• 그 밖의 사항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</table>				• 건축위원회심의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•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• 사전환경성검토 협의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• 개발행위허가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•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• 농지전용허가·신고 및 협의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• 하천점용허가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• 그 밖의 사항			
• 건축위원회심의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사전환경성검토 협의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개발행위허가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농지전용허가·신고 및 협의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하천점용허가	[]적합	[]부적합 (사유:	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그 밖의 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결정 제 호

「건축법」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,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유의사항	
「건축법」 제10조 제8항	•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